

## 충남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불어불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①출제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②출제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임교수로 위촉하고, 채점위원은 출제위원과 동일하게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,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(과목당 과락은 없음). 단,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④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어 능력 기준이 마련된 2008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DELF B1 이상
2. 박사학위과정 : DELF B2 이상

**제6조(논문지도위원회)** ①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박사학위과정에 논문지도위원회를 운영한다.

②논문지도위원회는 전공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입학자는 박사학위과정에 논문지도위원회를 두지 않는다.

**제7조**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박사학위 과정은 학진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거나,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국내학술회의 단독발표 1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게재예정 증명서(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)나 학술발표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8조**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이후 논문제출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지도위원회에 따른 경과조치)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